

여신거래약정서 등 변경 안내

은행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약정서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.

- 아 래 -

□ 주요 변경 내용

○ 대출거래약정서 (가계용_ 개별담보거래, 개별신용거래, 한도담보거래)

현 행	변 경	비 고
제12조 (제9조, 제14조) 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(□본인, □은행, □각 50%씩 본인과 은행)이 부담합니다.	제12조 (제9조, 제14조) 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	채무자와 은행의 균분 명시

○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

현 행	변 경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8조 (제3조) 제 절차이행과 비용부담</p> <p>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·변경·경정·이전·이관·말소 등에 관한 등기·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.</p> <p>② 채권자는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,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□내에 "V"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 <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3">부담주체</th> </tr> <tr> <th>채무자</th> <th>설정자</th> <th>채권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등록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>교육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>국민주택채권매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>법무사수수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>말소(저당권해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>감정평가수수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/tr> <tr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③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,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기일도래전 상황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금액을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. <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></p> <p>④ 제2항에서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과 근저당물건의 조사·점유·관리·처분 등에 관한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(가계용) 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.</p>	구분	부담주체			채무자	설정자	채권자	등록세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교육세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국민주택채권매입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법무사수수료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말소(저당권해지)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감정평가수수료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<p>제8조 (제3조)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</p> <p>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, 변경, 이전,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</p> <p>②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.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,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.</p> <p>1.국민주택채권매입비 : 채무자 또는 설정자</p> <p>2.등록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.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: 채권자 나.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: 채무자 또는 설정자</p> <p>3.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.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: 채권자 나.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채무자 또는 설정자</p> <p>4.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: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</p>	<p>담보대출 부대비용 부담주체 명시</p>
구분		부담주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채무자	설정자	채권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등록세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세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민주택채권매입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무사수수료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말소(저당권해지)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정평가수수료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○ 채무인수약정서

현행	변경	비고
<p>제5조 부대 비용</p> <p>이 증서의 작성이나 등기 기타 이 계약에 부대되는 모든 비용은 채무인수인이 부담합니다.</p>	<p>제5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 부담</p> <p>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</p> <p>②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, 변경, 이전,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</p> <p>③ 채권자는 제2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.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,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: 채권자 나.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: 채무자 또는 설정자 2.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근저당권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: 채권자 나.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 하는 경우 : 채무자 또는 설정자 3.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: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<p>④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,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,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.</p>	<p>담보대출 부대비용 부담주체 명시</p>

□ 시행일 : 2011. 7. 1.

※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,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HSBC 은행